

— 2000년 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년 10월 16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10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2000년 10월 21일

제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윤 영 섭

나. 제안이유

- 장천 보건지소 청사의 협소로 신축부지를 확보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부지와 금오산 주차장 및 잔디광장부지(시유지)를 상호 교환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.

다. 주요내용

(단위 :천원)

구분(교환)	소유자	자 목	자 적	추정가격 (감정가격)	비 고
취득재산	봉곡동 최영희외1	대 지	2필지 1,084㎡	196,800	장천 보건지소
	경상북도	전 외 5가지	49필지 30,782㎡	1,200,217	

구분(교환)	소유자	자 목	자 적	추정가격 (감정가격)	비 고
처분재산	구 미 시	전 외 5가지	42필지 68,702㎡ 건물:9동 2,369.92㎡	1,292,728	경상북도과 차액 +92,511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제83조, 시행령 제84조, 제96조, 제101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장천보건지소 건물의 협소로 신축 보건지소 부지를 확보하고 소유자와 운영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부지와 금오산 주차장 및 잔디광장 부지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호 교환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 저촉이나 타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